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1

제출연월일 : 2005. 4. 11
제 출 자 : 사 하 구 청 장

1. 제안사유

가. 2005. 4. 1자 직제개편에 따라 보건소에서 처리하던 식품위생업무가 사회산업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변경하고 간사의 명칭을 수정하며,

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중 부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하고, 간사의 명칭을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함 (안 제3조제3항 및 동조제6항)

나. 회계관계공무원중 기금출납명령관을 보건소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을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로 명칭 수정(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보건소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식품위생업무담당이"를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보건소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식품위생업무담당"을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명 "부산광역시사하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부산광역시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심의위원회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④ ~ ⑤ (생 략)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이** 된다.	**제3조(기금심의위원회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사회산업국장**----.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보건소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담당** ② (생 략)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1. -------- : **사회산업국장** 2. -------- :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② (현행과 같음)